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2항 제2문 중 “하고,”를 “한다.”로 하고, 제3문 “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”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으로 <u>하고,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</u> ③·④ (생략)	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으로 <u>한다.</u> ③·④ (개정안과 같음)